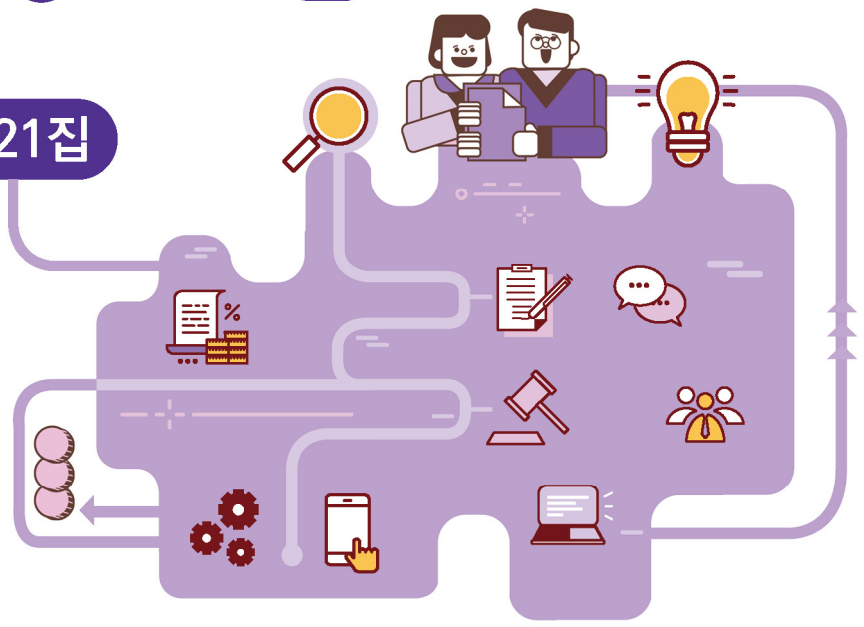


발 간 등 록 번 호
11-1140100-000210-10

2022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1집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일 | 러 | 두 | 기 |

『2022년 부패·공익침해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은 매년 공직사회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및 신고자 보상 등의 주요 사례를 정리한 21번째 자료집입니다.

본 사례집은 조사관 조사결과, 수사·감사·조사기관의 결과를 포함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사건과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구조금 등의 사례를 위원회 상정 순서에 따라 요약하고 정리한 사례집으로, 신고자가 신고를 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고 어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례집은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활용하여 공직사회에서 동일·유사한 부패·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 일조하고, 일반 국민에게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사례의 일부는 관계 기관에서 현재 감사·수사·조사가 진행되거나 소송 등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피신고자 등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2022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 사립대학교 교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 의혹	11
2.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12
3. 군 용역계약 관련 예산낭비 등 부패 의혹	13
4. 사립대학교 교수의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14
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계약 관련 부패 의혹	15
6.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 조작 등 인건비 편취 의혹	16
7.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원 인건비 편취 의혹	17
8.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의 운영비 편취 의혹	18
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용역사업비 부정집행 등 부패 의혹	19
10. ○○의료원 공직자 부패 의혹	20
11. 해상교량 강교도장 보수공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21
12.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부패 의혹	22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13.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 관련 금품수수 의혹	25
14. 마을만들기사업 등 보조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26
15. ○○대학교 병원 교수의 인건비 및 장학금 편취 의혹	27

제2장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1. 2022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3
2.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34
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35
4.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36
5. 정부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37
6.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38
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	39
8.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0
9. 학교 급식비 부정수급 의혹	41
1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42
11.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3
1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4

13.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5
1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46
15.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47
16.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48
17. 하숙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49
18. 국민연금(유족연금) 부정수급 의혹	50
19. 창업기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51
20.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2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1. 구매조건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55
2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56
2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57
24.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등 편취 의혹	58
2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59
26. 이진기술사업화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0
27.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61
2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62
29. 스마트공장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63
30.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64

제3장 공익신고 사건

01. 2022년 공익신고 사건

1.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의혹	69
2. 산지 무단개발 건축물 축조 등 의혹 신고	70
3.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전문과목 표시를 한 의혹	71
4. 불량 재료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김치를 제조한 의혹	72
5. 개인정보 위법 수집 의혹	73
6. 어린이집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 등 의혹	74
7.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75
8. 「게임산업 진흥법」 위반 뽑기방 운영 의혹	76
9. 불법 환자 유치 행위 의혹	77
10. 음란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의혹	78
11.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행위	79
12. 「화장품법」 위반 행위 의혹	80
13. 의료광고 금지 위반 행위 의혹	81
14. 중증 장애인 시설의 이용자(장애인) 학대 및 학대 은폐 의혹	82
15. 의사가 아닌 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혹	83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16.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의혹	87
17. 쇼트볼 제작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88
18.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의혹	89
19.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눈썹문신) 의혹	90
20.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91
21. 횡단보도 주차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92
22. 「관광진흥법」 위반 무허가 관광숙박업 운영 의혹	93
23. 「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 의혹	94
2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의혹	95
25. 중앙선 침범 및 안전지대 진입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96

제4장

신고자 보상·포상· 구조

0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1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2
3.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3
4.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4
5.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5
6.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6
7.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7
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8
9. 「양봉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09
10.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10
11. 「공공기관 소송비용 관련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111

02.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12.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15
13.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116

03.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14. 「폐수 무단방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19
1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20
1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21
17.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22

18.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123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124
20. 「불법복제저작물 유통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125
21. 「의료법 위반 의혹 유통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기각)	126

제5장

참고 자료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29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35
0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41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148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
01. 2022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01

2022년 부패행위 신고사건

1. 사립대학교 교수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분과 2022-1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허위 증빙자료 등을 만들어 제출하고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패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교육부 및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결과 관련 복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 주의, 「직원 대외활동 지침」 개선 통보
※ 통보일자 : 2022. 4. 5.
- 교육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혐의가 확인되어 중징계 처분
※ 통보일자 : 2022. 10. 12.
- 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어 2명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3. 2. 28.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SNS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교차 확인

2.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1분과위원회(2022. 4. 11.)

분과 2022-43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해역 정화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정구역 외에서 수거한 물량과 타지역에서 수거한 물량을 허위 보고하여 용역비를 편취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해양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에 대한 수사 및 조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해양경찰청으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해양경찰청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2명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10. 7.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 **착안사항** : 신고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통화파일 및 녹취서, 관계기관 제출 자료 등 교차확인

3. 군 용역계약 관련 예산낭비 등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5. 16.)

분과 2022-58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단 계약담당자로서 세탁, 물자정비, 폐품수집 등 민간위탁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근로자의 보험료를 잘못 산정하여 계약업체에 과도하게 금액을 지급하여 재정에 손실을 입힌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계약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행정상 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국방부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국방부 조사결과 보험료 과다 계상이 확인되어 주의 및 통보 요구, 1,780만 원 환수
※ 통보일자 : 2022. 7. 19.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 신고내용, 관련기관 제출 자료, 관련자 진술 등 확인

4. 사립대학교 교수의 정부 연구과제 연구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5. 30.)

분과 2022-64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 지원과제 책임연구자로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하여 위 과제의 연구결과로 제출하고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자를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이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받는 등 연구비를 편취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연구비 편취 여부, 연구 부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및 교육부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교육부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어 징계 및 기관 통보
※ 통보일자 : 2022. 9. 21.
 - 경찰청 조사결과 인건비 편취 혐의가 확인되어 기소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3. 2. 6.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 **착안사항** : 신고자가 제출한 논문과 피신고자가 제출한 논문 내용 비교, 계좌 거래내역 확인

5.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계약 관련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8. 29.)

분과 2022-87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지원사업을 담당한 자로 용역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를 마치 수행 능력이 있는 업체인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계약관련 법령 위반 여부, 행정제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광역시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결과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초과하였음에도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실제 용역 계약도 다른 업체와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담당자 징계 및 해당 업체 수의계약 배제 조치
 - ※ 통보일자 : 2022. 3. 16.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227조(허위공문서 작성 등)
• **착안사항** : 신고자가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확인

6. 공공기관 임직원의 근무시간 조작 등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2. 5.)

분과 2022-111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것처럼 순찰일지 등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편취하고 이를 묵인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인건비 편취 여부 및 묵인 의혹에 대한 감사 및 환수 등 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국토교통부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국토교통부 조사결과 근무시간 축소편성 관련 규정 위반 등이 확인되어 경고 19명 및 주의 19명
 - ※ 통보일자 : 2023. 5. 25.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확인

7.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원 인건비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2. 19.)

분과 2022-117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정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자들의 연구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수시로 변경·등록하여 실제 연구에 참여한 것보다 인건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이를 되돌려받아 인건비를 편취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인건비 편취 여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조사결과 계좌 거래내역 및 진술, 참여연구원 변경·등록 신청서 등을 확인한 결과 사기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3. 5. 23.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현금 인출내역, SNS 대화 내역,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8.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업체의 운영비 편취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1. 4.)

- ① 신고내용** • ○○군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 위탁 운영 사업의 계약을 추진하면서 협약서와 과업지시서에 따른 기술인력 등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계약업체가 공적 예산을 부당하게 취득하게 한 의혹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업체의 현장 인력 투입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③ 검토결과** • ○○도에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협약서보다 적은 인력을 투입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220,840,000원 환수
 - ※ 통보일자 : 2022. 5. 9.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347조(사기)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9.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용역사업비 부정집행 등 부패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8. 18.)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진흥원에서 전산유지보수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관련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의혹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가 전산유지보수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규정을 위반하였고 용역비 일부를 임의로 사용했다고 불만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처리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③ **검토결과** • ○○도에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전산유지보수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및 예산 낭비가 확인되어 32,017,000원 환수 및 주의조치
※ 통보일자 : 2023. 2. 2.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10. ○○의료원 공직자 부패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7. 5.)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출석한 것처럼 처리하여 참석경비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의료원장의 전공의 교육,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법정 휴가 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의혹

- ② 송부이유** • ○○의료원 내부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면밀한 사실확인이 필요함

- ③ 검토결과** • 보건복지부에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휴가제도 운영규정 미준수에 대한 기관 경고 및 기관 통보,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조치
 - ※ 통보일자 : 2023. 2. 1.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11. 해상교량 강교도장 보수공사 관련 부패행위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2. 10. 26.)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하도급 계약 신고 없이 자회사로 하여금 해상교량 강교도장 보수공사를 진행토록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한 의혹

- ② 송부이유 • 교량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불법하도급 여부 및 담당자의 불법행위 묵인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 ③ 검토결과 • ○○광역시에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광역시 조사결과 교량 도로 품질검사 미확인 등이 확인되어 담당자 징계 조치
※ 통보일자 : 2023. 2. 1.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배임)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12. 타이타늄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부패 의혹

1분과위원회(2023. 4. 24.)

분과 2023-36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사업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여 공공예산을 낭비하고 사업 진행 과정 중 필요한 기기를 직접 제작하거나 설치 시공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의혹
- ② 송부이유**
-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입찰과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필요하여 ○○도에 송부
- ③ 검토결과**
- ○○도에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시 계약담당자들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및 피신고자 업체의 계약 미이행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사실이 확인되어 계약 담당자 징계 및 부정당 업체 입찰참가 제한 통보
 - ※ 통보일자 : 2023. 2. 23.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제59조(신고의 처리)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제1장
부패행위 신고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13.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사업 관련 금품수수 의혹

2분과위원회(2021. 3. 15.)

분과 2021-51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직무관련자인 ○○시 도시미화과 업무담당자들에게 업무편의 목적으로 명절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수리비를 부풀려 ○○시를 기망하여 관리대행비를 지급받은 의혹

- ② 의결이유**
 -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의 관계, 금품의 품목 및 금액이 특정되어 있어 수사 및 감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수리견적서를 위조하여 정상계약인 것처럼 ○○시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11. 1.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3조(뇌물공여 등)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 선물 리스트,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확인

14. 마을만들기사업 등 보조사업 관련 부패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21. 3. 15.)

분과 2021-51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묵인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보조사업 계획서와 달리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도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보조사업 관리감독 소홀이 확인되어 훈계, 주의, 시정 조치
 ※ 통보일자 : 2022. 7. 25.
 - 경찰청 수사결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2. 8. 16.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15. ○○대학교 병원 교수의 인건비 및 장학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2. 19.)

분과 2022-118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국가예산으로 진행되는 연구과제에서 참여 연구원들로부터 통장과 도장을 받아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장학금을 보관·관리하면서 이를 편취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연구비, 장학금 등 지급 적정성, 관련자 징계, 피신고자들에 대한 사기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에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2. 10. 27.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347조(사기),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횡령, 배임)
• **착안사항** : 신고자 제출 계좌 입출금 내역,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여 확인

제 2 장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
01. 2022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2장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1

2022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1.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1. 10.)

분과 2022-6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8. 6.부터 2019. 5.까지 ○○원과 협약을 통해 ○○ 과제 및 2020. 12.부터 2021. 12.까지 △△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 한 의혹이 있고, 2018. 11.부터 2019. 10.까지 △△원과의 협약을 통해 □□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의 인건비를 돌려받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 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 ○○부로 이관
 - ※ 통보일자 : 2023. 2. 13.
 - 경찰청 수사 중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 착안사항 : 인건비를 돌려받은 피신고자 계좌내역,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2.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분과 2022-16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도 산하 △△가 주관하는 농공단지특화지원사업을 지원하면서, 이미 개발 및 특허출원이 완료된 기술을 바탕으로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8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 및 ○○부 주관 과제 수행을 통해 제작했던 카달로그를 △△ 주관 과제의 결과물로 중복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정부지원금 45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0조·제33조의2, 지방재정법 제97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 **착안사항** : 동일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통지서 및 피신고자가 수행한 타기관 선형 과제의 결과물 확인

3.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분과 2022-17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부, ○○도 주관 연구개발과제 11개를 수행하면서 구매처와 공모하여 허위 구매를 통해 사업비를 선결제 한 후 과제와 무관한 물품 및 장비를 구매하는 방법, 회의비 등을 전용하여 과제 수행과 무관한 직원들의 식대로 사용하거나, 연구수당을 명절상여금으로 집행하는 등 사업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부 주관 과제의 재료 구매 절차상 문제로 보조금을 환수 하였으나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피신고자의 연구비 횡령의 증거가 없어 입건 전 종결(혐의 없음)
 ※ 통보일자 : 2022. 3. 8.
 - ○○도 조사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종결
 ※ 통보일자 : 2022. 9. 20.
 - ○○부 조사결과, 일부 연구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3,753만 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3. 2. 9.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결과와 ○○도,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32조,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제31조·제32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4. 의료취약지 지원사업비 등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분과 2022-18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부터 2021.까지 의료취약지 지원사업,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 지방의료기관 간호사 지원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실제 각 사업의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지 않는 간호사를 전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보고하여 각 사업지원비 약 46억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 사기·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통한 부정수금액 환수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전원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2. 11. 16.
 - ○○부, ○○도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와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37조,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
 - 착안사항** : 간호인력 배치현황, 각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서와 실제 근무표 비교, 허위인력 간호사의 간호기록지와 투약기록지 등 확인

5. 정부 일자리 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14.)

분과 2022-19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21.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시니어인턴십 사업 등 정부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민간위탁 수행·운영하면서,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마치 사업 담당 인력들이 사용하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일자리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정부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다년간 정부 일자리 사업을 위탁 운영한바, 해당 사업 운영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통한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부,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원에 대한 인건비 1,090만 원 환수하고, 1,090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
 - ※ 통보일자 : 2022. 7. 11.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피신고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업체의 사내 조직도, 업무 메일 내용 등 확인

6.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금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2. 28.)

분과 2022-30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청년들을 허위로 채용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자필서명을 기재하는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고, 실제 업무에 투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을 속이기 위해 허위 근무지시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억 7,413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고, 허위 채용 청년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되돌려 받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행위의 고의성 및 사문서등 위·변조 등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각 지원금에 대한 조사 및 환수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부 조사 중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239조·제347조, 고용보험법 제35조,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업체의 허위 업무지시 메일, 급여를 돌려받은 피신고자 등 명의의 계좌, 신고자·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7.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3. 14.)

분과 2022-32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시 소재 ○○센터의 대표 및 활동지원사들로서, 수급자 및 활동 지원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바우처카드 및 단말기를 별도로 보관하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도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거나, 장애인 자립여행 프로그램에 동행한 적이 없음에도 제공인력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결제하는 등 2014.부터 2021. 12.까지 ○○시로부터 6억 원 상당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편취한 의혹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 중
 - ○○시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37조, 장애인 활동법 제24조·제35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들의 대화 녹취록, 자립 프로그램 참여자 명단 및 바우처 결제 내역 비교를 통해 부정 결제 내역 확인

8.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4. 25.)

분과 2022-5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21. 1.부터 2021. 12.까지 ○○도의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농사시설 설치 지원금을 받으면서, 일부 시설을 중고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치업자와 공모하여 사업비를 부풀려 농업보조금을 교부받은 뒤 설치업자에게 지급된 농업보조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11. 16.
 - ○○도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경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도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 착안사항** : 중고시설 설치 공모 정황이 담긴 녹취록, 업체간 돈을 주고받은 통장거래내역, 부정발급된 세금계산서 취소를 위한 국세청 내용증명 등

9. 학교 급식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5. 30.)

분과 2022-6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0년부터 신고일까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과정에서 상호 공모하여 식자재 납품수량을 부풀려 청구한 후 납품업체가 대금의 잔액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에게 되돌려 주거나, 급식비 잔액을 식자재로 허위 발주하면 납품업체가 대금 전액을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에게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학교 급식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징수, 징계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시,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 중
 - △△도 조사 중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0.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2. 9. 19.)

분과 2022-93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산하 ○○원이 주관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 및 용역인력을 허위로 고용하고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편취하고, 용역인력의 작업기록을 조작하여 부정하게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용역수행 회사 선정과정에서 제안서 기술평가표를 조작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용역비를 부정사용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허위 인력 채용, 작업기록 조작을 통한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 및 감사와 부정수급액 환수 등 행정조치 필요
- ③ 의결결과**
- 대검찰청,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대검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어 사기 등 혐의로 기소
※ 통보일자 : 2023. 1. 31.
 - ○○부 조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대검찰청 수사결과를 수용하고, ○○부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제355조·제356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제9조
 - 착안사항** : 용역인력의 작업 로그기록, 허위 채용 인력의 출퇴근 기록 조작 CCTV 영상,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11. 일학습병행제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1. 25.)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공단과 일학습병행제 사업 및 훈련실시 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근로자들을 별도 훈련과정에 참여시키지 않고 정상근로하게 하였으나, 소속근로자들이 일학습병행 관련 훈련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금액 미상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근로자 출퇴근 기록 임의 조작 여부, 당시 소속 근로자들의 실제 출퇴근 기록 등 구체적 증거자료 추가 확보 필요성 있으므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일학습병행제 훈련 비용 부정수급이 인정되어 부정수금액 6,690만 원 환수, 추가징수액 6,690만 원 부과 조치
 ※ 통보일자 : 2022. 5. 12.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를 확인할 수 없어 입건 전 종결
 ※ 통보일자 : 2022. 12.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제56조·제62조의3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훈련 실시일에 근무를 한 작업장 사진,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12.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2. 23.)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2020. 5.부터 2021. 12.까지 직원들의 유급휴직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으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대상직원 5명에게 업무를 지시하여 실제로는 상시 근무 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금액 미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금액 1억 1만 원 환수, 추가 징수액 2억 3만 원 부과 및 지원금 지급 제한 12개월
 - ※ 통보일자 : 2022. 5. 12.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조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의를 확인할 수 없어 입건 전 종결
 - ※ 통보일자 : 2022. 12.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 **착안사항** : 업무일지를 게시한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업무지시 및 보고 관련 이메일 수발신 내역 등 상시근무 증빙 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비교

13. 국공립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3. 7., 2022. 6. 3.)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2020. 3.~2022. 2.기간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 휴일 근무수당 등 인건비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어린이집 운영과 무관한 물품을 운영비 보조금으로 구입한 의혹이 있고, 야간연장보육 미이용 원아들에 대해 서류를 허위로 꾸미는 방법으로 야간연장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이익·이자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도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휴일 근로수당 부정수급, 야간연장 보육교사 근무수당 부정수급, 야간연장보육료 부정수급,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 목적의 사용을 확인하여 총 6,471만 원 반환명령하고, 피신고자 원장 자격정지 1년 및 고발 조치
 ※ 통보일자 : 2022. 12. 6.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제8조·제9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 **착안사항** :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내역, 어린이집 등하원일지, 아동별 야간보육 실적 확인

14.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4. 5.)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대표 겸 원장으로 2022.부터 2022. 2. 동안 일부 교사가 보육업무를 하지 않음에도 담임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하고, 실제 등록된 근무시간보다 적게 근무를 하는 보육교사로부터 급여를 일부 돌려받았으며, 2021. 부터 연장반을 운영하지 않음에도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고, 어린이집에 출석하지 않는 원아를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관련 보조금 및 보육료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시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9. 13.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보육료 및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여 8,576만 원 환수 조치하고,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1년
 - ※ 통보일자 : 2023. 2. 27.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45조·제45조의2·제54조
 - **착안사항** : 교사 단체채팅방 대화내용, 신고자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15.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5. 30.)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의 소득이 월 450만 원에 달하며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2018년부터 ○○시로부터 금액 미상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의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시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총 9,515만 원 환수 조치
 - ※ 통보일자 : 2022. 7. 14.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3. 3. 9.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제29조
 - 착안사항** : 피신고자의 SNS 계정 게시물, 신고자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16.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6. 2.)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병원 대표로 감염예방 관리료 및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전문의 가산 수가를 청구하기 위하여 인력·급여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필요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감염관리 업무 수행 여부 및 중환자실 전문전담위 배치 위반 여부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감염예방 관리료 및 일반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입원료 부정수금액 9억 7,226만 원 환수 예정
 - ※ 통보일자 : 2022. 10. 31.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3. 3. 14.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와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제115조, 의료급여법 제23조·제3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병원 소속 의사 진료 시간표, 중환자실 전담위 근무표 및 병동 당직표 확인

17. 하숙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7. 15.)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도서지역) 소재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허위 등재하는 방법으로 2007.~2021.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두 자녀에게 지원 되는 하숙비 지원금 4,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의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교육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교육청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하숙비 지원금 부정수급액 760만 원 환수 조치하고 △△교육지원청 기관주의 처분
 ※ 통보일자 : 2022. 11. 23.
 - 경찰청 수사 중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확인하여 종결 예정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18. 국민연금(유족연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8. 16.)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2016.1.경부터 사실혼 배우자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생활비를 지원받는 등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2,579만원의 유족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수사와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3. 1. 30.
 - ○○부(○○공단) 조사결과,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처리하고 2,918만원 환수 조치
※ 통보일자 : 2023. 2. 22.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및 수사기관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국민연금법 제3조·제57조·제72조·제73조·제75조·제115조·제121조·제12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피신고자 거주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19. 창업기업지원금 등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8. 26.)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창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서류를 만들고 정산서류를 조작하여 창업지원금을 부정수급 하였고, 전배우자를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으로 등록하여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도,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사업비 부정지출이 확인되어 부정수금액 500만 원 환수 예정
 - ※ 통보일자 : 2023. 1. 16.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허위 인력등록으로 인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수금액 1,140만원 환수, 제재부가금 5,700만 원 부과. 보조금 지급 제한 5년 조치 및 피신고자 및 해당 법인 등 관련자 4명 고발조치
 - ※ 통보일자 : 2023. 1. 19.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고용보험법 제3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20.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12. 9.)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시 소재 (주)○○ 및 일본 현지 소재 (주)△△의 대표로서, 2020.부터 2022.까지 ○○공단에서 주관하는 온라인수출 지원사업 수행사로 참여하면서 판매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피신고자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 등 행정조치를 위해 송부

- ③ 검토결과**
 -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허위실적 보고 등 부정수급 행위를 확인하여 지원금 1억 7,844만 원 환수 및 참여제한 2년 조치
 - ※ 통보일자 : 2023. 2. 7.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 조사결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33조의2·제40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제2장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21. 구매조건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8. 12. 17.)

분과 2018-46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5. 12.부터 2016. 11.까지 ○○부 산하 △△원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의 구매조건부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임차한 장비 및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치 등을 신규 구매한 것으로 속이는 방법으로 금액 미상의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들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및 법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19. 5. 3.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중 연구장비·재료비 등을 집행하면서 실제 거래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오집행된 건들에 대하여 불인정하여 5억 5,305만 원 환수하고, 피신고자 및 참여기관에 각 참여제한 15년 조치
 - ※ 통보일자 : 2022. 8. 5.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33조·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 진술, 해당 과제 최종보고서, 관계기관 제출자료 확인

22.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4. 29.)

분과 2019-109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6.부터 2019. 4.까지 ○○부, △△부, □□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비를 거래업체 등에 적립금 형태로 관리하면서 연구와 무관한 물품 구입에 사용하고, 연구과제 간 출장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편취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부,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2,424만 원 환수 및 540만 원 제재부가금 부과하고 피신고자와 참여업체에 각 참여제한 3년
 ※ 통보일자 : 2020. 3. 5.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1억 623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20. 8. 7.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 통보일자 : 2021. 1. 15.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1억 2,816만 원 환수조치
 ※ 통보일자 : 2023. 2. 13.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신고업체의 업무일정 공유 내용, 관계 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3.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19. 7. 15.)

분과 2019-19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4. 1.부터 2019. 5.까지 ○○부, △△도, □□시로부터 매년 운영비 1억 7천만 원을 지원받아 사회복지시설 ○○을 운영하면서 가족 등 지인 4명을 조리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 및 수당 총 1억 240만 원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 등 4명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2. 11.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배제 결정 및 제재부가금 2억 8,406만 원 부과
 - ※ 통보일자 : 2022. 8. 5.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보조금 1억 4,794만원 환수 및 시설 폐쇄 조치
 - ※ 통보일자 : 2022. 12. 23.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4. 예비사회적기업 보조금 등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19. 8. 5.)

분과 2019-210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주)○○의 대표이사로 ○○시로부터 2018. 6.부터 2019. 3. 기간 동안 예비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기존에 근무 중인 3명을 새로 채용한 것처럼 입사일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고, △△공단으로부터 장애인 작업시설 구축 지원금을 받으면서 허위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과 □□원으로부터 신제품 개발 지원금을 지원받으면서 타 업체로부터 납품 받은 제품을 신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관련 지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시, △△부,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신제품 개발 서류를 허위 제출이 확인되어 사업비 4,000만 원 환수 및 관련 지원사업 참여제한 5년
 - ※ 통보일자 : 2019. 10. 22.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0. 5. 11.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인건비 부정수금액 5,655만 원 환수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제한 5년
 - ※ 통보일자 : 2023. 2. 27.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인건비 부정수금액 중 국비에 대한 제재부가금 2억 1,208만 원 부과
 - ※ 통보일자 : 2023. 3. 2.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지방재정법 제97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장애인고용법 제2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피신고업체 출퇴근기록부,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4. 6.)

분과 2020-254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운송업체를 운영하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정주유소에 보관하면서,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화물차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후 그 주유 금액을 추후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유가보조금 편취 혐의에 대한 수사 및 유가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필요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6. 11.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혐의가 확인되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및 화물차량 총 47대에 대하여 2억 4,474만 원 환수 결정
 ※ 통보일자 : 2022. 8. 5.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44조
 • **착안사항** : 신고자 및 참고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26. 이전기술사업화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0. 7. 6.)

분과 2020-458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부 산하 △△공단의 사무용 의자 관련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지급받은 기술개발비로 과제에 대한 시험용 제품의 재료를 구매하지 않고, 자사 제품 제작비용을 사용하였음에도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사용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을 확인하여 9,294만 원 환수 및 제재부금 6,794만 원 부과 및 5년간 참여제한 조치
 - ※ 통보일자 : 2023. 2. 13.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7. 20.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7. 고용유지지원금 편취 의혹

1분과위원회(2020. 9. 7.)

분과 2020-608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휴업 대상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하여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임시 사무실을 만들어 휴직대상 근로자들의 컴퓨터를 옮겨두고 휴업일 또는 휴업시간에 대상 근로자들을 정상 출근하게하여 근무를 시킨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용노동부로부터 금액미상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 4,904만 원 환수 및 추가징수액 9,808만 원 부과하고 지원금 지급제한 12개월
 - ※ 통보일자 : 2021. 7. 19.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2. 1. 28.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고용보험법 제35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28.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7. 5.)

분과 2021-118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배우자를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보육교사의 근무일 또는 면직일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인건비를 부정수급하고,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부정입력하여 연장보육료 등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담임교사 및 보육교사 보조금 등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1. 10. 20.
 - ○○시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이 확인되어 보조금 1억 8,419만 원 반환 처분하고, 피신고자 원장자격 취소 및 허위 등록 교사 보육교사 자격 취소, 해당 어린이집 시설폐쇄 조치
※ 통보일자 : 2023. 1. 25.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4조, 보조금법 제40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29. 스마트공장지원 사업비 부정수급 의혹

1분과위원회(2021. 7. 19.)

분과 2021-12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는 2017년에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규로 구축한다는 내용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지원하여 ○○부로부터 5,052만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가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부 조사결과, 피신고자의 부정수급을 확인하여 5,052만 원 환수 및 참여 제한 3년 조치
 ※ 통보일자 : 2022. 10. 4.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통보일자 : 2023. 3. 30.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47조, 보조금법 제40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사용중인 시스템 관련 구입비용 전자 계산서 및 사용 매뉴얼,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30. 지역체육단체 보조금 횡령 의혹

1분과위원회(2021. 5. 24.)

분과 2021-91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들은 2017.부터 2020.까지 ○○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국제대회, 전국대회, 도내대회 등 각종 대회를 운영하면서, 친인척과 지인들을 운영요원으로 허위 등록하여 심판수당, 인건비, 행사진행비 등을 지급하였다가 다시 협회 통장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242만원을 편취하고, 실제로 구입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여 배부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하여 출연금을 지출하거나, 규정에 없는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출연금을 지급하여 300만 원의 출연금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의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수사 및 조사, 부정이익 및 이자의 환수·제재부기금 부과·징수 등 행정조치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경찰청, ○○도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경찰청 수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 의견 송치
 - ※ 통보일자 : 2021. 11. 5.
 - ○○도 조사결과, 피신고자들의 부정집행을 확인하여 1,731만원 환수하고, 해당 협회에 교부금 교부 제한 1년
 - ※ 통보일자 : 2022. 7. 26.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 수사결과 및 조사기관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형법 제356조, 지방재정법 제97조,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
 - 착안사항** : 신고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관계기관 제출자료 등 확인

제 3 장 공익신고 사건

-
01. 2022년 공익신고 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제 3 장
공익신고 사건

01

2022년 공익신고 사건

1.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222. 8. 29.)

분과 2022-155호

- ① 의안개요** • 피신고자 2022. 2. 24. 서울특별시 ○○에 위치한 강○○약국에서 명찰을 착용하지 않은 채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맥시쿨펜연질캡슐 10캡슐, 안티푸라민쿨파워플라스타 10매를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 의혹이 있음
- ② 의결이유** • 피신고자가 손님에게 의약품인 맥시쿨펜연질캡슐 10캡슐, 안티푸라민쿨파워스타 10매를 판매하는 장면이 녹화된 동영상과 의약품 구매 영수증이 확인되어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함
- ③ 의결결과** • ○○○시 ○○구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약사의 지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형사 고발 및 업무정지 10일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시 ○○구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21조
 - **착안사항** :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여부

2. 산지 무단개발 건축물 축조 등 의혹 신고

관계기관 송부(2022 2. 24.)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가 인천광역시 OO구 OO동 산 OO번지 지목이 임야인 산지를 무단개발하여 건축물을 축조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서 및 증거자료(부동산종합증명서, 위성사진)를 검토한 결과, 해당 부지를 찍은 위성사진에 건축물로 보이는 형상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전반적인 조사 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시 ○○구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현장 확인 결과, 해당지번에는 건축법 위반 건축물 총 9건, 향측 적발 8건(2000년 향측 3건, 2003년 향측 1건, 2007년 향측 4건), 지도·단속 1건(2017. 11. 2. 적발)이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음. 매년 시정 지시 후 미 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3.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전문과목 표시를 한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2. 17.)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000도 00시 00대로 2층에 위치한 ‘00메디컬 의원’의 전문의로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함에도 00메디컬의원 블로그 의료진 소개 항목에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성형외과 전문의’라고 표기하여 전문과목을 허위로 표시함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정보에 ‘00메디컬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 신고자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에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에는 피신고자가 ‘성형외과 전문의’로 표기되어 있어 피신고자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전문 과목을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당 신고된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하여 ‘000도 00시’로 송부하는 한편, 이와 관련 전반적인 수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000시 00구 및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000시 00구 : 해당 의원이 게시한 블로그 내용의 소개항목 중 ‘성형외과 전문의’ 표시한 사실과 대표원장의 산부인과 전문의임을 확인하여 행정지도 및 고발
 - 경찰청 : 본 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미 수사하여 기소의견 송치하여 본 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제7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4. 불량 재료와 비위생적인 제조시설에서 김치를 제조한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2. 23.)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김치제조 업체인 주식회사 OO식품 및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로, 누구든지 씹거나 상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되고, 식품의 제조 등 취급을 함에 있어서 위생적으로 김치를 제조해야 함에도 피신고자는 20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000도 00군 00읍 00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의 김치공장에서 김치를 제조함에 있어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배추가 속이 썩어 갈변되는 등 불량한 상태의 배추를 사용하여 김치를 제조하였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 및 검수대장에 입고된 배추가 벌레 먹거나 속이 썩어 갈변된 배추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입고대장에는 김치제조에 적합한 품질의 '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기재되어 실제 이러한 배추를 이용하여 김치를 제조했는지 여부 및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김치를 제조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신고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하여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000도 00군 및 00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000도 00군 : 「식품위생법」 제3조(식품등의 취급) 위반으로 과태료 50만 원 처분
 - 00부 : 해당 업체를 행정조사하여 수사기관에 고발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5. 개인정보 위법 수집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0. 10. 14.)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태관리를 이유로 개인지문을 등록받아 사용하였으며, 체온측정을 이유로 안면인식을 하게하는 등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체온측정기 등록안내 문자사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신고내용 만으로는 피 신고자의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위원회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직원동의 없는 지문정보 수집 및 열화상 카메라에 얼굴이름 등록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위반하여 과태료 500만 원 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6. 어린이집의 보육 목적 외 부정 사용 등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1. 12. 23.)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① 교사들의 임금에서 4대 보험금을 원천공제하고도 보험금을 체납하면서 개인적으로 부정 사용한 의혹, ② 미등록 차량을 정식 등록 차량이라 속이고 매월 학부모들로부터 운영비를 받아 부정사용한 의혹 등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사용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거자료로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인 '○○부'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부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정지 6개월 및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6개월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7.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관계기관 송부(2022. 2. 10.)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 '○○고 ○○○○의 화물차 차주는 2021. 12. 29.부터 2022. 1. 1. 오전 3시경(○○ ○○구 ○○식품 앞)까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유상운송을 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거자료로 볼 때 해당 화물차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일 가능성이 높으나 신고 된 운행과 관련하여 유상 운송업을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반적인 조사 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광역시'로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광역시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금지)에 따라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8. 「게임산업 진흥법」 위반 뽑기방 운영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4. 4.)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도 ○○시에서 ‘픽미뽑기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2. 2. 3. 영업 외 시간인 오전 1시 44분에 사업장을 운영하고 열쇠를 이용해 상품을 획득할 수 있게 하거나 고가의 상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서, 제출된 사진 등을 통하여 피신고자가 해당 영업장에서 2022. 2.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시간(09:00 ~ 24:00) 외 시간인 오전 1시 44분에 영업을 한 것이 보이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허용한 액수(10,000원)를 초과한 제품으로 보이는 닌텐도, 스타벅스 텀블러 등을 뽑는 제품으로 비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신고자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반적인 조사 및 수사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시와 경찰서에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도 ○○시 및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 및 경품제공 인정되어, 영업정지에 135일 같은 과징금 6,750,000원 부과
 - 경찰청 : 피신고자 혐의 있다고 판단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9. 불법 환자 유치 행위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1. 18.)

- ① 신고내용**
- 1. 피신고자 1, 2는 2018. 7월부터 현재까지 피신고자 3이 백내장 수술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술비의 30%~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하거나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의 수술비를 20%를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사실 등이 있음
 - 2. 피신고자 1은 2018. 7월부터 2019. 3월까지 피신고자 4가 백내장 수술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술비의 30%~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제공하거나 실손보험이 없는 환자의 수술비를 20% 감면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한 사실 등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제출된 환자명단 등으로 볼 때, 피신고자들이 불법 환자 유치 등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이 확인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경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수사기관
 - 브로커들의 자백 진술, 피의자 김00 계좌에서 확인된 알선비 지급 관련 거래내역서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0. 음란 영상물 등을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전시한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1. 7. 26.)

- ① 신고내용**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등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서 및 제출된 증거자료로는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경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수사기관
 - 인터넷 트위터 계정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여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을 위반하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1.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판매 행위

관계기관 송부(2022. 5. 3.)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2022. 3. 19. ‘코데날 시럽’ 등의 처방약을 신고자에게 조제·판매 하였는데 그 중 ‘코데날 시럽’은 유효기간이 2022. 1. 18.까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침해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해당 약국의 조제·복약 안내 봉투 사진에는 조제일자가 2022. 3. 19.로 써 있고 ‘코데날 시럽’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신고자가 별도로 제출한 사진에는 사용기한이 2022. 1. 18.로 기재된 물건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 찍혀 있는바, 신고 내용 관련 전반적인 조사 등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 ○○시로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도 ○○시 송부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고발 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8호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2. 「화장품법」 위반 행위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2. 18.)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2021. 9.경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라놀크림이 상처난 상처와 염증을 진정 등의 효과가 있다는 내용 등을 게재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 등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광고내용 사진자료 등으로 볼 때, 피신고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업체의 라놀크림이 '상처와 염증 진정' 효과 등이 있다며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나 공익침해행위 해당 여부 관련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피신고자가 「화장품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반적인 수사 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인 경찰청으로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수사기관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하여 기소 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화장품법」 제1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3. 의료광고 금지 위반 행위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1. 12. 28.)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 불상경 유튜브에 시력교정 수술 등에 대한 의료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제출된 광고영상 사진으로 볼 때,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광고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해당 공익침해행위 관련 전반적인 수사 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해당기관인 경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수사기관
 - 피의자들의 진술 및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된 영상 자료 등의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들의 범죄혐의 인정되어 피의자들에 대하여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4. 중증 장애인 시설의 이용자(장애인) 학대 및 학대 은폐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3. 18.)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 1은 ○○○도 ○○시 ○○길 ○○에 위치한 장애인 복지시설의 직원으로, 2022. 1. 23. 시설 내에서 이용자에게 “야~이 미친 놈아” 라는 폭언과 함께 이용자를 들고 이리저리 던지는 등 학대 행위를 함으로써 상해(뒷머리 부어오름, 복부와 겨드랑이 쓸린 자국과 멍)를 입혔으며, 해당 시설 원장인 피신고자 2는 학대 사실을 은폐하고 피신고자 1을 감싸려는 듯한 태도를 보임

② 송부이유

- 신고자는 신고서와 함께 신고자와 피신고자 1과의 대화 녹음파일, 신고자 2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통해서도 피신고자 2의 해당 사건 은폐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피해자로 보이는 성명 불상자의 사진과 신고자와 피신고자 1간의 대화 내용(“...난동 부려도 놔둬 버릴걸...”, “나도 욕하는 걸 못 참아서... 잘못된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을 볼 때, 피신고자 1이 시설 이용자로 보이는 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기관(○○○도 ○○시, 경찰서)으로 송부하고자 함

③ 검토결과

- ○○○도 ○○시 및 경찰청 송부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장애인 복지시설 3년 제한
 - 경찰청 : 「장애인복지법」 위반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⑤ 비 고

- 적용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5. 의사가 아닌 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혹

관계기관 송부(2022. 1. 11.)

- ① 신고내용**
- 2021년 불상의 일시부터 현재까지 위 병원 수술실에서 몸에 스크류와 와셔를 삽입하였던 환자의몸에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가 아닌 자(간호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중 1인)에게 ①척추마취 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주입한 후, 환자가 잠이 들면 마취된 환자를 절개하고 스크류와 와셔를 뽑은 후 꿰매는 방법, ② 환자가 마취되면 환자 몸을 절개한 후 삽입된 스크류와 와셔를 뽑고 “론저”(수술용 기구)로 지지분한 것을 긁어내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하여 확인하는 방법, ④환자의 골반 골수를 뽑고 관절 내시경으로 관절염 부위를 긁어내는 “콘드록가이드”라는 재료를 삽입하고, ④마취과 전문의가 공보의(의사 신분으로 군복무 중인 군인을 말함)에게 마취를 시키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키고, 피신고자 2는 피신고자 1의 지시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수술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에 근거해 보면 피신고자들이 위와 같은 공익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되나, 동영상 자료에 수술을 하는 자가 의사가 아닌 직원인지 여부와 실제로 몇 회 어떤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수술행위를 하였는지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함. 따라서 신고내용이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경찰청 송부하고자 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송부
- ④ 처리결과**
- 수사기관
 - 제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범행 당일 대리수술 동영상 및 이에 부합하는 진료기록,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결과 등은 각 피의자들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충분하며 혐의 모두 인정되어 피의자 6명 모두 기소이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8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제 3 장
공익신고 사건

02

신고사건 처리결과 추록

16.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의혹

2분과위원회(2023. 4. 10.)

분과 2023-51호

- ① 신고내용** • 노래연습장업자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신고자는 2022. 10. 18.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 내방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 내용과 신고자 제출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신고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에서 ○○노래방이라는 간판과 피신고자가 술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고자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③ 검토결과** • ○○○도 ○○시, 경찰청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도 ○○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영업정지 10일 처분
 - 경찰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실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 및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7. 쇼트볼 제작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2분과위원회(2023. 2. 13.)

분과 2023-15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 1~3은 국내 유통되는 쇼트볼과 쇼트그릿 가격이 하락하자, 2017년 8월 경부터 합의하여 3개 회사가 각각 낙찰받을 물량을 미리 정한 후 해당 제품 구매입찰마다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담합으로 인해 해당 제품 가격이 상승하게 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피신고자 1~3의 대표이사들이 직원들을 통해 2017년 10월경부터 국내 사용 쇼트볼과 쇼트그릿 물량을 계산하여 각각 얼마만큼의 제품을 낙찰받을지 협의하였고, 해당 제품의 구매입찰마다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구체적인 조사 필요
- ③ 검토결과**
- ○○부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신고자 1, 2, 3은 국내 금속 연마용 투자재 시장에서 서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거나 공급가격을 공동으로 결정·인상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인정되어 시정조치 및 과징금 14억 부과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8. 식육포장처리업체의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23. 2. 13.)

분과 2023-15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로에 위치한 식육포장처리업체로서 제조일이 표기된 라벨지보다 하루나 이틀 전에 작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고 하루 전 제조일로 표기된 라벨을 사용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에서 ○○○영농조합법인이 제조원으로 납품한 돈사태가 라벨지로 작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당 사진들의 촬영일자가 2022.5.21.임에도 불구하고 라벨지에는 제조일자가 2022.5.23.로 작성된 것이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신고자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③ 검토결과** •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시 :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1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19.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눈썹문신) 의혹

2분과위원회(2022. 11. 10.)

분과 2022-197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20. 2. 23.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에 위치한 위 장소에 내방한 손님을 상대로 눈썹문신을 하였고, 불특정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후기, 시술 후 사진 등을 게시함으로써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피신고자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물 캡처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피신고자가 성명불상자에게 눈썹문신을 하였고,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홍보내용도 확인되므로 피신고자가 무자격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이첩
- ④ 수사결과**
- 수사기관
 - 피신고자가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위 관련 증거자료들로 범죄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어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의료법」 제2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0. 어린이 보호구역 주차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22. 10. 4.)

분과 2022-176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OO이사 앞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본인 소유 차량을 장기간 주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에 개인 소유 물건을 두어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를 위반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의 제출 사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OO이사 앞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OO자OO 차량이 주차된 것과 OO이사의 소유로 추정되는 물건이 적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인접 주차 및 도로에 물건 적치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 ③ 검토결과** • ○○○도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2022. 7. 18. 현장 조사결과, 피신고자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과태료 12만 원 부과 처분
 * 다만, 「도로교통법」 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관련하여는 자진 정비 계도 조치 (2022. 7. 25. 현장 재확인 결과 자진 정비되었음을 확인, 추후 재발 시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 실시 예정)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1. 횡단보도 주차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22. 8. 29.)

분과 2022-155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00보00 등록번호판의 차량을 2022. 6. 9.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00 아파트단지 앞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주차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를 위반한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의 제출 사진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2022. 6. 9. 00보00 차량이 횡단보도에 인접하여 주차한 것이 확인되는 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횡단보도 인접 주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 ③ 검토결과**
- 000도 00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신고된 해당 차량이 「도로교통법」 제32조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차량의 소유자에게 계고장을 발송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계도 조치
 - * 다만, 주정차 위반 관련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를 통해서만 운영하기에 해당 사건의 경우 별도의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음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32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2. 「관광진흥법」 위반 무허가 관광숙박업 운영 의혹

2분과위원회(2022. 8. 8.)

분과 2022-145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강원도 평창군에 소재한 OO리조트의 대표이사로서 「관광진흥법」 제 20조가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에 한하여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고자는 대관령 리조트 관광 사업자 등록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2. 2. 22.부터 현재까지 관광사업의 시설에 회원 모집을 하여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 제출 자료와 강원도 평창군 문의 결과 OO리조트는 현재 폐업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자료상 피신고업체는 2022. 2. 22. 신고자에게 문자를 보내 회원 모집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③ 검토결과** • ○○○도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2013. 2. 21. 관광숙박업을 폐업한 이후 일반숙박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새로이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관광숙박업 명칭인 휴양 콘도미니엄 및 유사한 명칭인 콘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을 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관광진흥법 제20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3. 「식품위생법」 위반 무허가 휴게음식점 영업 의혹

2분과위원회(2022. 8. 8.)

분과 2022-145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사회적 협동조합 00이사장으로 무허가 상태에서 커피 등의 식음료를 판매하는 북카페를 운영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으며, 북한강과의 거리가 50m가 되지 않은 장소에서 식품접객업의 하나인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여 「한강수계법」을 위반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 ② 승부이유**
- 양평군청 식품접객업소 현황상 피신고업체는 현재 양평군청에 식품접객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인스타그램 게시자료와 네이버 카페 업로드 자료 등을 통하여 해당 업체에서 음료를 판매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또한 「한강수계법」과 관련하여 피신고업체의 주소는 경기도 남양주시 두물로 00로로 네이버 지도 등에서 북한강과의 거리가 500m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시설의 하나인 휴게음식점영업을 설치하여 「한강수계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③ 검토결과**
- 000도 00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양평경찰서에 고발조치, 해당 피신고업체가 위치한 지역은 수변구역 외 지역으로 「한강수계법」 관련 해당 사항 없음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4.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 의혹

2분과위원회(2022. 7. 25.)

분과 2022-132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직원들을 고용하여 7대 내외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식자재 등의 물품을 배송하는 등 유상운송행위를 하고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가 제출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보이는 차량(2개)에 물품들이 실려 있는 것이 확인되나 해당 행위가 불법 유상운송행위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조사 필요
- ③ 검토결과** • ○○○도 ○○시 이첩
- ④ 처리결과** • **조사기관**
 - 피신고자는 2018년부터 2019. 11. 6.까지 경상북도 ○○군 ○○면 ○○로 3리 47 소재 ○○FS(푸드시스템)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3대를 유상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여 칠곡경찰서에 수사익뢰
 * 칠곡경찰서 : 피신고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되어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 **위원회 검토의견**
 -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25. 중앙선 침범 및 안전지대 진입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2분과위원회(2022. 7. 11.)

분과 2022-122호

- ① 신고내용**
- 피신고자는 00하00 등록번호판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2022. 5. 6. 오후 경상남도 거제시 중앙대로 부근에서 안전지대 진입 및 중앙선 불법 진입 등의 「도로교통법」 제13조(차마의 통행),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위반 의혹이 있음
- ② 송부이유**
- 신고자의 블랙박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고자가 2022. 5. 6. 16시 50분경 00하00 차량이 안전지대를 진입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도로교통법」이 금지하는 안전지대 진입과 중앙선 침범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 ③ 검토결과**
- 경찰청 이첩
- ④ 수사결과**
- 수사기관
 - 피신고 차량에 대한 제보 영상 및 사진을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안전지대 진입과 중앙선 침범 위반 사실이 모두 확인되었으나, 동일일시·동일차량에 대하여 가급적 가장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만 처벌을 권장하고 있는 경찰청 「도로교통법」 단속 해설집*에 근거하여 가장 중대한 위반 사항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중앙선 침범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90,000원 행정처분
 - 위원회 검토의견
 -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여 종결처리
- ⑤ 비 고**
- 적용법령 : 「도로교통법」 제13조
 - 착안사항 : 신고자 진술 및 제출자료 등

제 4 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
0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02.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03.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제 4 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

1.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3. 2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3. 4.)

제2022-228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인 피신고자들이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이혼한 전 남편과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벌금 200만원, 생계급여 등 1,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37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2.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3. 28.)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3. 4.)

제2022-240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실업급여 수급자인 피신고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실업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0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3.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6.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6. 3.)

제2022-478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한부모가족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5,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사실혼 관계이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피신고자 소유의 재산을 인낙한 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5,2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 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③ 결정결과**
- 1,5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4.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7. 25.)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7. 8.)

제2022-577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요양급여비용 편취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3,5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병원의 대표인 피신고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업에 참여하면서 간병지원인력의 근로시간을 부풀려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지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3,5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1,0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5.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5. 16.)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5. 4.)

제2022-401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사회적 기업 대표인 피신고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받은 사업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물품가를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2,2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③ 결정결과**
- 68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6.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8. 29.)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8. 5.)

제2022-653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7,7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인 피신고자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허위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들에게 7,7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2,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7.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5. 16.) | 보상심의위원회(2022. 5. 4.)

제2022-406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9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어린이집 원장인 피신고자가 어린이집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9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27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8.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5. 16.)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5. 4.)

제2022-394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억 7,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피신고업체가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으로 허위등록하여 인건비를 횡령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1억 7,4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4,4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9. 「양봉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11. 21.) | 보상심의위원회(2022. 11. 4.)

제2022-820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양봉사업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1,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양봉업에 종사하는 피신고자가 피신고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하여 양봉 사업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고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1,6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 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③ 결정결과**
- 49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0.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10. 1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10. 7.)

제2022-761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사업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2,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지자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한 후, 모두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는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나목) 신고로 인정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에게 2,400여만 원의 환수결정이 있었으며, 위 환수결정이 신고서에 구체적으로 적시된 내용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6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68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81조
- **착안사항** : 해당 신고가 부패행위 신고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11. 「공공기관 소송비용 관련 예산낭비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2. 10. 17.) | 보상심의위원회(2022. 10. 7.)

제2022-769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공공기관 소송비용 관련 예산낭비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기관의 소송담당자가 패소자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 당시 ○○기관의 소송비용 상환청구 기한이 4년 이상 남아있으므로 공공기관에 수입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
- 설령 ○○기관이 소송비용을 환수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 당시 소송비용 상환청구 기한이 남아 있었으므로, 신청인의 신고가 없었다면 공공기관이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위 신고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간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

③ 결정결과

- 기각 :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없음, 신고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간 직접적 관련성 없음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9조
- 착안사항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인지 여부 등

제 4 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2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12.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2. 7. 25.)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7. 8.)

분과 제2022-614호

- ① 의안개요**
- 신고자는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업체와 보일러 설치 보조사업자들이 보일러 지원 사업비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하였고, 위원회 사건 조사 부서에서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일부 피신고업체들 및 피신고사업자들에게 신분상 사법처분인 징역형 등이 선고되었으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고자는 목재펠릿 보일러 제조업체와 보일러 설치 보조사업자들이 공모하여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일러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해 일부 피신고업체들 및 피신고사업자들에게 함께 4년 10개월의 형이 선고됨
 - 포상금 지급 기준 중 '신분상 사법처분'에 해당함
- ③ 결정결과**
-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부패신고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3.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의혹」 건 관련 포상금 지급

전원위원회(2022. 7. 25.) | 보상심의위원회(2022. 7. 8.)

제2022-615호

① 의안개요

- 신고자는 피신고업체가 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약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고 ○○공공기관에 신고하였고, ○○공공기관에서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9,400여만 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고자는 피신고업체가 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해당 연구과제와 무관한 약품 구매에 사용하고 있다고 ○○공공기관에 신고함
- 위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9,400여만 원이 환수되어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왔고, 고질적인 연구개발비 부정사용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공익증진에 기여함
- 포상금 지급 기준 중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함

③ 결정결과

-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 **착안사항** : 부패신고 해당 여부, 포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제 4 장
신고자 보상·포상·구조

03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례

14. 「폐수 무단방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4. 25.)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4. 8.)

제2022-372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폐수 무단방류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3억 7,0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폐기물 소각업체인 피신고업체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고 ○○시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국민의 환경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게 벌금 4,000만 원, 수질초과배출부과금 43억 1,50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③ 결정결과**
- 3억 5,8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5.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4. 25.) | 보상심의위원회(2022. 4. 8.)

제2022-374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억 5,6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 대표인 피신고자가 고용안정지원금, 청년고용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금액 1억 6,00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2,8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4. 25.)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4. 8.)

제2022-375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건을 지자체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6,2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키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금액 6,20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③ 결정결과**
- 1,2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7.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6.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6. 3.)

제2022-534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부당청구 의혹」 건을 지자체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3,5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학원 원장인 피신고자가 학부모코칭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다른 수업을 진행하고 바우처카드로 결제한 뒤, 제공 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부정수급액 3,50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7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8.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부당청구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인용)

전원위원회(2022. 6.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6. 3.)

제2022-535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부당청구 의혹」 건을 노동부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1,800여만 원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업체가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자를 허위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부정수급액 1,800여만 원이 부과되고,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 ③ 결정결과**
- 300여만 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1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2. 3. 28.) | 보상심의위원회(2022. 3. 4.)

제2022-293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나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원수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불법으로 수입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민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되어 공익신고와 국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어 보상금 지급사유가 존재함

③ 결정결과

- 기각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 이하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20. 「불법복제저작물 유통 의혹」 건 관련 보상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2. 6. 27.) | 보상심의회위원회(2022. 6. 3.)

제2022-539호

-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불법복제저작물 유통 의혹」 건을 위원회에 신고한 후,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신청인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신고업체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웹소설을 불법 복제하여 유통하였다고 위원회에 신고함
 - 신청인의 신고내용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다만, 신청인은 피신고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가 아니므로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고, 위 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 증대도 없음
- ③ 결정결과**
- 기각 :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대도 없음
-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6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내지 제24조
 - 착안사항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 보상금 지급사유인지 여부

21. 「의료법 위반 의혹 유통 의혹」 건 관련 구조금 지급(기각)

전원위원회(2022. 7. 25.) | 보상심의위원회(2022. 7. 8.)

제2022-625호

① 의안개요

- 신청인은 피신고병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지자체에 신고한 후 피신고병원의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당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으니 구조금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은 이 신청 건 신고를 익명으로 하여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

② 심의내용

- 신청인은 피신고병원의 「의료법」 위반 의혹을 지자체에 익명으로 신고함
- 위 신고 이후 피신고병원의 원장 및 직원으로부터 명예회손 등으로 고소당하여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했으니 변호사 수임료를 구조금으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함
- 신청인은 이 신청 건 신고를 익명으로 하였는바, 공익신고에 해당되지 않음

③ 결정결과

- 기각 : 익명으로 신고하여 공익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함

④ 비 고

- 적용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8조·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착안사항 :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 5 장

참고 자료

-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0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제5장
참고 자료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01. 부패·공익신고 제도의 이해

1. 부패신고 제도(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함)

1)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55조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64조

2)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 특히 공직자는 지체 없이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방법)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 ②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3) 신고 대상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부패행위는 다음과 같음

-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4) 신고 처리절차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권익위 → 조사기관)
| 공직자 부패사건에 대한 재정신청(권익위 → 고등법원)

2. 공익신고 제도

1)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2조

2) 신고 주체 및 방법

- (주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음
※ 반드시 근로자나 업체관계자 등 내부 신고자로 한정하지 않음
- (방법)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익신고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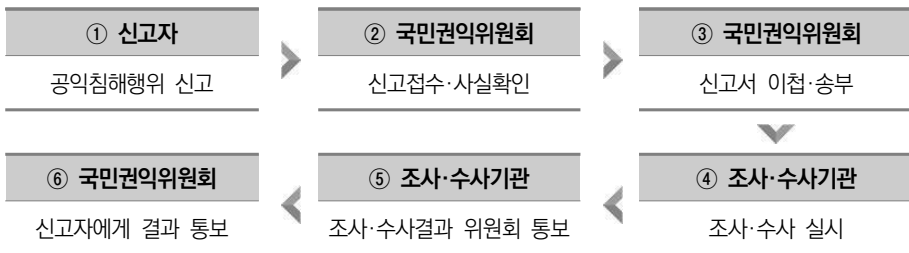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사·공단 등의 공공단체
- ◆ 국회의원
- ◆ 국민권익위원회

3) 신고 대상 : 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471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별첨> 공익신고 대상법률

4) 신고 처리절차

- 위원회 신고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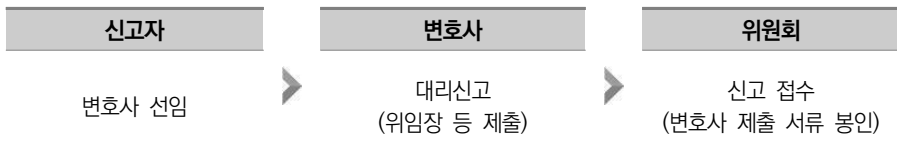
| 조사·수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재수사 요구(권익위 → 조사·수사기관)

- (조사·수사기관의 처리)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조사·수사기관은 조사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보
- (대표자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대표자들은 그 내용을 확인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협조 요청
※ 대표자들은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공익신고자가 동의한 경우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신고사항 이송
- (국회의원, 공공기관 등의 처리)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기관,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에 이송

5)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 (개요) 신고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자의 이름이 아닌 변호사의 이름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18.10.18. 시행),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22.7.5. 시행)을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신설
-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신고자를 대리하여 변호사의 이름으로 부패·공익신고를 하고, 증거자료 제출이나 조사·수사 과정에서의 의견진술 등도 대리 가능
- (제출 서류) 대리신고를 하려는 변호사는 변호사의 이름으로 작성한 신고서,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주민등록증 사본 등) 및 위임장을 봉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변호사 대리신고 절차〉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보관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 불가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위원회에서는 내부 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가 수당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자문변호사 이외의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더라도 신고자가 내부 신고자인 경우는 자문변호사에 준하여 비용을 지원
 - ※ 신고자로부터 대리신고 관련 비용을 지급받으면 비용 지원 불가

제5장
참고 자료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02.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

1)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 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가능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2)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게 신고등을 한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제1항)
※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신분보장등조치 결정)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신분보장등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
※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등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 공직자인 신고자는 위원회에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신분보장등조치 권고) 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가·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2항)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3) 신변보호

- 신고등으로 인해 신고자·협조자·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4) 책임감면

- (책임의 감면)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의 감면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 (직무상 비밀의무 준수 배제)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제3항)

5)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불이익 추정) 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
- (화해권고) 위원회는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부패방지권익위법 제63조의2)

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1) 비밀보장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동의 없이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하여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가능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제5항)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분보장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들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할 수 없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이익 조치의 종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6호)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공익신고자 보호법」 제 20조)
※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천만 원 이하, 매년 2회의 범위 내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 (보호조치 권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허가 또는 계약의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신분보장등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제2항)
- (특별보호조치 결정)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라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공익신고자로 보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의2)

3) 신변보호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4) 책임감면

- (형의 감경·면제)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1항)
- (징계·불리한 행정처분 감면)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2항)
-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3항)
※ 단체협약, 고용계약, 공급계약 등에 규정된 공익신고의 금지·제한규정은 무효
-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 청구 금지(「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

5) 기타 보호제도

- (신고방해, 취소강요 금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 벌금
- (불이익 추정)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공익신고등이 있는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공익신고등을 한 후 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추정(「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 (화해권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해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음(「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4조)
- (징벌적 손해배상)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제5장
참고 자료

0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03.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1. 부패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1) 보상금

- (신청요건) 부패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 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
-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 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원 이하	보상대상가액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 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 1천만 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 2천만 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8%	
40억원 초과	4억 8천만 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부패신고의 정확성 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신고자가 부패사건 해결에 기여한 정도
지급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공제 사유	<p>▶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p> <p>①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p> <p>②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p>
--------------	--

※ 보상대상가액 :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 금액, 또는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보상금 지급 절차



2) 포상금

- (지급요건)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포상금을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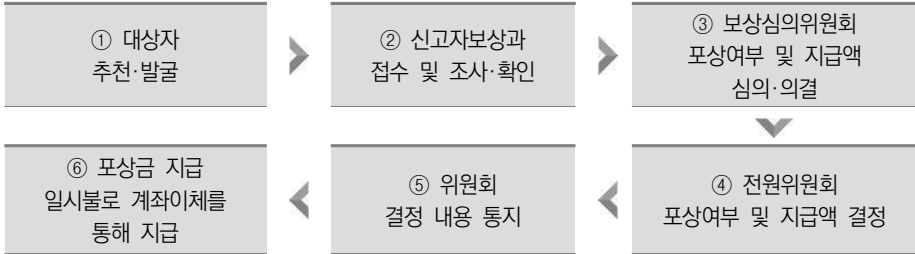
❖ 포상금 지급 사유

-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 중지로 한정),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공공기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공기관이 포상금 지급 요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지급금액) 최대 5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3) 구조금

- 신고자 및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과 관련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제3항)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구조금 지급은 '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2. 공익신고자 보상·포상·구조금 제도

1) 보상금

- (신청요건) 내부 공익신고자에 한하여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보상금 신청 가능(「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 ◆ 벌칙·통고 처분, 몰수·추징금 부과
- ◆ 과태료·이행강제금,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 부과
- ◆ 국세·지방세 부과, 부담금·가산금 부과,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23.9.22. 이후의 신고부터는 국가·지자체가 아닌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나 증대가 있는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 신청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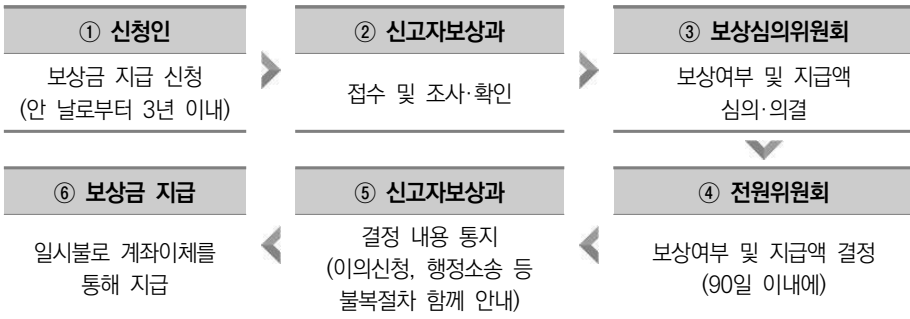
- (지급금액) 보상대상가액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 20만 원 초과액~최고 30억 원

▶ 보상금 지급 기준 및 감액 사유 등

보상대상가액	지급 기준	비 고
1억 원 이하	2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천 만 원+1억 원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7천 6백 만 원+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이하	2억 2천 6백만 원+20억 원 초과금액의 6%	
40억 원 초과	3억 4천 6백만 원+40억 원 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30억

감액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내부 공익신고자가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 내부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지급 제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공직자였던 자를 포함)가 그 조사 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공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포상금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이하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많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②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가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으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받은 보상금 등의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함

▶ 보상금 지급 절차



2) 포상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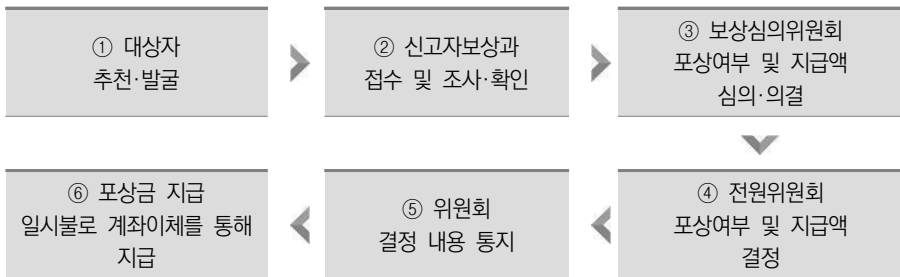
- (지급요건) 국가·지자체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 방지, 제도개선에 기여하는 등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의 재량으로 내·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 포상금 지급 사유

-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형의 선고,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 외부 공익신고자의 경우, 과태료·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지급금액) 최대 2억 원 범위 내에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포상금 지급 절차



3) 구조금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 피해·비용 지출 사유

-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 (긴급 구조금)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국가는 구조금의 범위에서 그 피해·비용지출의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붙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건강〉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소방청)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3	가축전염병 예방법(농림축산식품부)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5	건강검진기본법(보건복지부)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7	검역법(질병관리청)
8	결핵예방법(질병관리청)
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10	공중위생관리법(보건복지부)
11	국민건강보험법(보건복지부)
12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
13	국민영양관리법(보건복지부)
1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국방부)
15	노인복지법(보건복지부)
16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건복지부)
1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8	농약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19	담배사업법(기획재정부)
2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21	먹는물관리법(환경부)
22	모자보건법(보건복지부)
23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질병관리청)
24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무부)
25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복지부)
26	비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7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28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2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0	소금산업 진흥법(해양수산부)
3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해양수산부)
3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33	식물방역법(농림축산식품부)
34	식물신품종 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5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6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의약품안전처)
37	식품산업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8	식품안전기본법(식품의약품안전처)
39	식품위생법(식품의약품안전처)
40	약사법(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41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4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약품안전처)
43	위생용품 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4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4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6	의료급여법(보건복지부)
47	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4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49	의료법(보건복지부)
50	인삼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51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5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5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5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6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7	종자산업법(농림축산식품부)
58	지역보건법(보건복지부)
59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60	청소년 보호법(여성가족부)
61	축산물 위생관리법(식품의약품안전처)
6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6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경찰청)
64	학교급식법(교육부)
65	학교보건법(교육부)
66	혈액관리법(보건복지부)
6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8	화장품법(식품의약품안전처)
69	환자안전법(보건복지부)
70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질병관리청)

〈안 전〉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3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4	건설기계관리법(국토교통부)
5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6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7	건축물관리법(국토교통부)
8	건축법(국토교통부)
9	건축사법(국토교통부)
10	경비업법(경찰청)
1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1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13	공연법(문화체육관광부)
14	공항시설법(국토교통부)
15	광산안전법(산업통상자원부)
1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7	교통안전법(국토교통부)
1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국토교통부)
1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토교통부)
20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22	궤도운송법(국토교통부)
2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24	기계설비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5	낚시 관리 및 육성법(해양수산부)
26	농어촌도로 정비법(행정안전부)
27	농어촌정비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28	농업기계화 촉진법(농림축산식품부)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1	도로교통법(경찰청)
32	도로법(국토교통부)
33	도선법(해양수산부)
34	도시가스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3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6	도시철도법(국토교통부)
37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3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경찰청, 대검찰청, 법무부)
39	보안관찰법(법무부)
40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4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4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44	사회복지사업법(보건복지부)
45	산업안전보건법(고용노동부)
4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원자력안전위원회)
47	석면안전관리법(환경부)
48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해양수산부)
49	선박안전법(해양수산부)
50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51	선박직원법(해양수산부)
52	선원법(해양수산부)
5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5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57	소방기본법(소방청)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8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청)
59	소방장비관리법(소방청)
60	승유관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61	수상레저안전법(해양경찰청)
62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6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64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65	승강기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6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67	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6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법무부)
6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7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행정안전부)
7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산업통상자원부)
72	어선법(해양수산부)
7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산업통상자원부)
7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75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해양경찰청)
76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안전위원회)
77	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위원회)
78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79	위험물안전관리법(소방청)
80	유선 및 도선 사업법(행정안전부)
81	자동차관리법(국토교통부)
82	자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소방청, 해양경찰청, 행정안전부)
84	재해구호법(행정안전부)
8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행정안전부)
8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87	전기공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88	전기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89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90	전력기술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91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92	제품안전기본법(산업통상자원부)
93	주차장법(국토교통부)
94	주택법(국토교통부)
95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국방부)
96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기상청)
97	지진·화산재해대책법(행정안전부)
98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99	집단에너지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10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경찰청)
101	철도안전법(국토교통부)
10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03	청소년활동 진흥법(여성가족부)
104	청원경찰법(경찰청)
105	체외진단의료기기법(식품의약품안전처)
10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10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소방청)
10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경찰청)
10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법무부)
11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교육부)
11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14	항공보안법(국토교통부)
115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116	항로표지법(해양수산부)
117	항만법(해양수산부)
118	해사안전법(해양수산부)
119	해양경비법(해양경찰청)
12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21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경찰청)
12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청)
123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 환경 〉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
3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5	골재채취법(국토교통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11	내수면어업법(해양수산부)
12	농지법(농림축산식품부)
1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4	대기환경보전법(환경부)
15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1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19	문화재보호법(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20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환경부)
21	물환경보전법(환경부)
2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환경부)
23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산업통상자원부)
2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환경부, 산림청)
25	사방사업법(산림청)
2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산림청)
27	산림보호법(산림청)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청)
29	산지관리법(산림청)
3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환경부)
3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해양수산부)
3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산림청)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3	소음·진동관리법(환경부)
34	소하천정비법(행정안전부)
35	수도법(환경부)
36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산림청)
37	수산업법(해양수산부)
38	수산자원관리법(해양수산부)
39	습지보전법(환경부, 해양수산부)
40	실내공기질 관리법(환경부)
41	악취방지법(환경부)
4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43	어장관리법(해양수산부)
44	어촌·어항법(해양수산부)
45	연안관리법(해양수산부)
46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47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4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5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부)
51	자연공원법(환경부)
52	자연환경보전법(환경부)
53	자원순환기본법(환경부)
5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5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
5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국무조정실)
57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환경부)
5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59	지하수법(국토교통부)
60	초지법(농림축산식품부)
61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62	폐기물관리법(환경부)
6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64	하수도법(환경부)
65	하천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6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67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해양수산부)
6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69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0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71	해양환경관리법(해양수산부)
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73	환경보건법(환경부)
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부)
75	환경영향평가법(환경부)
7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

〈 소비자 이익 〉

1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	계량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6	고령친화산업 진흥법(보건복지부)
7	고용보험법(고용노동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9	공인중개사법(국토교통부)
10	관광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11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12	근로복지기본법(고용노동부)
13	금융지주회사법(금융위원회)
14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15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7	대외무역법(산업통상자원부)
18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1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국토교통부)
20	말산업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21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산림청)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2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문화체육관광부)
2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24	물류정책기본법(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
2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28	방송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2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금융위원회)
30	보험업법(금융위원회)
31	복권 및 복권기금법(기획재정부)
3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3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경찰청)
3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보건복지부)
3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37	산업디자인진흥법(산업통상자원부)
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노동부)
39	산업표준화법(산업통상자원부)
40	상표법(특허청)
41	상호저축은행법(금융위원회)
42	새마을금고법(행정안전부)
4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산업통상자원부)
44	석탄산업법(산업통상자원부)
45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원회)
4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자원부)
47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8	수산종자산업육성법(해양수산부)
4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5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1	신용협동조합법(금융위원회)
5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53	아이돌봄 지원법(여성가족부)
54	에너지법(산업통상자원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국토교통부)
56	여신전문금융업법(금융위원회)
57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58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59	예금자보호법(금융위원회)
60	외국환거래법(기획재정부)
61	외식산업 진흥법(농림축산식품부)
62	우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6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방송통신위원회)
6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65	유아교육법(교육부)
66	은행법(금융위원회)
6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문화체육관광부)
6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0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금융위원회)
71	입양특례법(보건복지부)
72	자격기본법(교육부, 고용노동부)
7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74	장애인복지법(보건복지부)
7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금융위원회)
76	전기통신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77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8	전자금융거래법(금융위원회)
7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81	전자서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2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8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8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85	중소기업은행법(금융위원회)
86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87	직업안정법(고용노동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88	철도사업법(국도교통부)
89	축산법(농림축산식품부)
9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91	통신비밀보호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9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교육부)
9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5	항만운송사업법(해양수산부)
96	해운법(해양수산부)
9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국도교통부)
〈공정한 경쟁〉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	경륜·경정법(문화체육관광부)
3	국민체육진흥법(문화체육관광부)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법무부)
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7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청)
10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11	유통산업발전법(산업통상자원부)
1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14	저작권법(문화체육관광부)
15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
16	주민투표법(행정안전부)
1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벤처기업부)
18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보건복지부)
19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국도교통부)
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21	한국마사회법(농림축산식품부)
22	항공사업법(국도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이에 준하는 공익〉

1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찰청)
2	고등교육법(교육부)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5	공공주택 특별법(국토교통부)
6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행정안전부)
8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9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10	국가보안법(법무부)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국방부)
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보건복지부)
13	국민연금법(보건복지부)
14	국유재산법(기획재정부)
15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칙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16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국방부)
17	군사기밀 보호법(국방부)
1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국방부)
19	군형법(국방부)
20	귀속재산처리법(기획재정부)
21	근로기준법(고용노동부)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고용노동부)
2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고용노동부)
2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27	기초연금법(보건복지부)
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2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0	노후준비 지원법(보건복지부)
3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3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국토교통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3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3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35	민방위기본법(행정안전부)
36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3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38	방위사업법(국방부, 방위사업청, 산업통상자원부)
39	방위산업기술 보호법(국방부)
4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
41	병역법(국방부, 병무청)
4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보훈처)
4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45	부정수표 단속법(법무부)
4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
4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행정안전부)
48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
49	사립학교법(교육부)
5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52	아동수당법(보건복지부)
53	영해 및 접속수역법(외교부)
54	예비군법(국방부)
5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56	임금채권보장법(고용노동부)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5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보건복지부)
5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교육부)
6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고용노동부)
6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63	장애인연금법(보건복지부)
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분야 및 법률명(소관부처)

66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67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69	재일교포 복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경찰청)
70	전파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71	주거급여법(국토교통부)
7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중소벤처기업부)
73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국방부)
74	지방세기본법(행정안전부)
75	지방재정법(행정안전부)
7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77	청소년 기본법(여성가족부)
78	청소년복지 지원법(여성가족부)
79	초·중등교육법(교육부)
80	출입국관리법(법무부)
8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방부)
82	한부모가족지원법(여성가족부)
83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산업통상자원부)

이 용 안 내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신고 전에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우 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팩 스

(044) 200-7972

인 터 넷

홈페이지 www.acrc.go.kr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 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1층 국민권익위원회

전 화 상 담

국번없이 1398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 (제21집)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발행인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발행일 2023년 8월

본 부패·공익 신고 및 보상 사례집의 내용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
Tel. 044)200-7688 Fax. 044)200-7943

